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4. 9. 3(화) 10:00

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푸른미래도시국 공원녹지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92호
- 나. 제 출 자 : 장규권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8. 2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8. 22.

2. 제안이유

맨발걷기에 적합한 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공간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맨발걷기 산책로의 보행안전에 힘쓰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 (안 제3조제3항 신설).
- 나. 조성계획 수립 시 지역 간 균형과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함 (안 제4조제3항 신설).
- 다. 맨발걷기 산책로의 오염 방지, 토사 유실 복구, 침수 방지 등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함(안 제5조제2호 신설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, 제6조, 제6조의5, 제16조의3 등
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, 제4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4. 8. 23. ~ 8. 30.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맨발걷기 산책로의 안전 조치 및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.

나. 주요 내용

1) 맨발걷기 산책로의 보행안전에 힘쓰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 (안 제3조제3항 신설)

○ 맨발걷기 산책로에서 맨발걷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에 힘쓰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함

□ 안양천 황톳길 조성현황

- 위 치 : 금천구 독산동 733-28 일원(안양천 둔치)
- 관리부서 : 금천구청 치수과
- 규 모 : 연장 100m(폭 2~3m) (준공일 : 2024.5.31.)
- 사 업 비 : 200백만원

□ 향후 맨발걷기 조성사업 계획

- 사업기간 : 2024. 3. ~ 12. (10월부터 순차 개장 예정)
- 위 치 : 총 5개소
 - (만수천)독산동 산8 개미유아숲 맞은편 (궁도장 입구)시흥동 1010-9
 - (금천체육공원)독산동 산 375-1 독산도서관 뒤편
 - (오미생태공원)시흥동 산77-1 *금천녹색광장에서 대상지 변경
 - (독산동시설녹지)독산동 1094 *신규 포함 검토중
- 규 모 : 각 대상지 100 ~ 150m 내외 맨발 산책로 조성
- 사업내용
 - 황톳포장, 세족장, 차양시설, 휴게시설(파고라, 등의자 등)
 - 신발보관함, 안내판, 상수인입 및 배수시설 등
- 소요예산 : 총 786백만원 ※ 구비 262, 특교세 200, 특교금 324

2) 조성계획 수립 시 지역 간 균형과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함 (안 제4조제3항 신설).

- 3) 맨발걷기 산책로의 오염 방지, 토사 유실 복구, 침수 방지 등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함(안 제5조제2호 신설).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활발히 조성되고 있는 맨발 걷기 산책로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국민건강증진법

[시행 2024. 7. 10.] [법률 제19958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3조(책임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9. 12. 3.>

제6조의5(건강도시의 조성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·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·개선하는 도시(이하 “건강도시”라 한다)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3(신체활동장려사업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
2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
3.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

[시행 2023. 9. 29.] [대통령령 제33755호, 2023. 9. 26., 일부개정]

제22조의2(신체활동장려사업)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
2.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 사업
3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사업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[본조신설 2021. 11. 30.]

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9. 15.] [법률 제19234호, 2023. 3. 14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5. 7. 20., 2017. 7. 26., 2022. 1. 11.>

1. “보행자길”이란 보행자(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마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

아. 그 밖에 통학로, 탐방로, 산책로, 등산로, 숲체험코스,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

2. “보행환경”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·생태적·역사적·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.

제3조(보행권의 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,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, 임산부, 어린이,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